

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제정	2005. 11. 22	조례	제1417호
개정	2007. 6. 5	조례	제1538호
	2008. 6. 16	조례	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	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3. 12. 31	조례	제1982호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	제2197호
일부개정	2017. 3. 12	조례	제2242호(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	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0. 6. 19	조례	제2630호
일부개정	2023. 12. 28	조례	제3073호
일부개정	2024. 4. 5	조례	제310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과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(이하 “각급 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20. 6. 19>

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보조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12. 31, 2016. 9. 26, 2024. 4. 5>

1.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
2.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
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4. 학교의 냉·난방비 등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5.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
6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7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협력·교육지원사업

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7% 이상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28]

제4조(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)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등학교의 장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6. 5, 2016. 9. 26, 2020. 6. 19>

1.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
2.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
3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
4.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
5.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.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.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6>

1.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
3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
4. 보조사업의 효과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국·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심의)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광명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6. 9. 26]

제6조 삭제 <2016. 9. 26>

제7조 삭제 <2016. 9. 26>

제8조 삭제 <2016. 9. 26>

제9조 삭제 <2016. 9. 26>

제10조 삭제 <2016. 9. 26>

제11조 삭제 <2016. 9. 26>

제12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3조(보조금의 반환 등)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9. 26, 2018. 7. 31>

1.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
2.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
3.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4.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

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9. 26>

제14조(보고 및 검사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시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6, 2020. 6. 19>

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규정)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 9. 26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6. 5 조례 제153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⑦ 부터 ⑩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2. 31 조례 제198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3. 12 조례 제2242호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
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6. 19 조례 제263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부칙 <2023. 12. 28 조례 제30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4. 5 조례 제310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